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2)

19:00 개 회

19:05 인사말 법 료 (평화재단 이사장)

19:10 발 표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 1차 수정안”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9:30 토 론

※ 사회 :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토론 (가나다순)

 김낙중 (평화통일운동가,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박서진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송상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서면토론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21:30 폐 회

목차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²⁾

발표문	4
운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평화협정(안)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김낙중 평화통일운동가	33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38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43
참고자료	
한반도 평화협정안 원안과 제1차 수정안 비교 도표	53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²⁾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 1차 수정안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1) 1안 : 4자(남.북.미.중) 당사자안
 - (1) 한반도 평화 기본협정
 - (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부속협정
 - (3)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부속협정
- 2) 2안 : 종전선언 + 남.북 당사자안
 - (1) 한반도 종전선언
 - (2)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기본협정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미합중국(이하 '미국')(네 당사자를 모두 지칭할 때,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였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기본협정과 관련 당사국간 부속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당사국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 당사국간 관계정상화, 불가침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평화적 통일 등 제반 과제에 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쳤다. 당사국은 이 협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이 협정을 이행,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전쟁의 종료 등

제1조(전쟁의 종료)

당사국은 1950. 6. 25. 시작하여 1953. 7. 27.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조(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등)

- (1)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2) 당사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¹⁾.
- (3)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4) 당사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²⁾.
- (5) 당사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

1) 중국과 미국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침의 범위를 한반도 내로 제한하였음.

2)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지향을 반영

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 지원한다.

제2장 한반도 비핵화

제4조(비핵화선언)

당사국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

제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조치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협정 체결 시까지 이행하기로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향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³⁾, 관련 핵시설의 폐기를 비롯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나머지 당사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포기 절차 진행에 상응하여 6자 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경제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2) 당사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확대,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제6조(상호사찰)

대한민국과 미국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의 핵무기 및 핵무기 제조 가능 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찰을 허용한다⁴⁾.

3)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완료(핵무기 폐기)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동 조항은 필요 없게 된다. 동 조항은 2. 13합의에 따른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된 후 미북간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4) 2. 13합의에 의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핵사찰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북한이 남한 내 핵무기를 문제 삼을 경우, 사찰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협정안에 포함시켰다.

제3장 평화관리방안

제7조(평화지대의 설치)

- (1)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
- (2)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다.
- (3) 평화지대에는 일체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 (4)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

- (1) 이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 협정의 이행과 평화관리를 위하여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를 둔다.
- (2)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준수 과정을 감독하며, 이 협정에 위반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조사, 협의, 조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 (3)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동수로 구성한다.
- (4) 동 위원회에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협정 위반 관련자 혹은 동 위원회에 의하여 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5)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⁵⁾.

제9조(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

- (1) 이 협정의 이행, 준수, 보장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를 둔다.
- (2) 동 위원회는 ①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심사, 조정, 권고, ② 이 협정의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증, ③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발생한 이견의 조정, ④ 기타 이 협정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 (3) 동 위원회는 미국 대표자, 중국 대표자, 대한민국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조선민주

5) 정전협정 12-31항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전기구는 군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평화협정의 성격상 군 관계자 외에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주의인민공화국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제10조(타 조약과의 관계)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체결한 제3국과의 조약,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 발효 후 발생한 당사국간 분쟁이 당사국간의 협의와 조정 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국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개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제11조(외국군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의 주둔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5장 부칙

제12조(효력의 발생)

이 협정은 당사국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이 협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유엔 사무국에 등록한다⁶⁾.

제14조(유효기간)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5조(수정, 보완)

이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당사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상호 합

6) 유엔헌장 제102조 : 1. 이 헌장이 발효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떤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부속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과 함께 체결된 당사국간 부속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한 부분으로서 이 협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08. . . .

대한민국 대표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부속협정

제1조(기존 합의의 존중 및 통일 노력)

(1) 대한민국(이하‘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북’)⁷⁾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이하 ‘1991년 합의서’라 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6.15 공동선언(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공존과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 위 1991년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함께 설치하기로 한 화해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⁸⁾.

제2조(불가침 등)

(1)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

(2)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991년 합의서 제2장‘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 준수한다.

(3)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비핵화)

남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⁹⁾.

제4조(경계선)¹⁰⁾

7)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과 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8)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 및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협정체제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으로 삼고자하는 시도.

9) 전체적인 비핵화 선언과 북한의 비핵화조치는 기본협정에서 언급되었고, 남북 부속협정에서는 남한의 비핵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0)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이행합의서 제 3장 참조.

- (1)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 7. 27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2)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협의 대상 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¹¹⁾
- (3) 남과 북의 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 (4) 남과 북은 이상의 지상, 해상, 공중 경계선을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준수한다.

제5조(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 (1)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2) 남과 북 사이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간의 군비통제 논의와 더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 생물무기협약(BWC) 비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과 같은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 준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 (4)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6조(화해)

- (1) 남과 북은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상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 (2)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1) 해상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에 관하여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 당국 간에 계속하여 협의 중인 바, 본 협정 체결 단계에서는 경계선 문제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수가 없는 관계로,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단계로서 일종의 평화지대 개념인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정하였다.

제7조(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1)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¹²⁾

(2) 남북 상호간은 1991년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합의한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을 이 협정 체결 시점의 남북관계에 조응하여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이를 위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1)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상주대표부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 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제10조(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으로 조성될 평화 상태를 남북 간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의 장관급 대표자 동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12) 제외 탈북자의 입국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남북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협정에 표기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되, 관행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11조(상설협의기구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총리급을 공동대표자로 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상설협의기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남북관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12조(정상회담의 정례화)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준수와 남북 간의 경제 및 교류협력,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008. . . .

대한민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부속협정

제1조(불가침)

- (1)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미국이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2)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2조(평화공존)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제4조(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방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에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국교정상화 등)

- (1)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협정 체결 전까지 이행하기로 6자회담 참가국간에 합의된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의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¹³⁾
- (3) 미국은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13) 이 협정안은 북핵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상정하고, 수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해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완료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 참가국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추가 비핵화 조치를 제(1)항의 쌍방 국교관계 정상화 시점까지 완료한다.

(5)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제6조(주한미군)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의 위상을 한반도의 평화유지 목적에 한정한다.

제7조(경제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화 조치 이행과 병행하여 상호간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미국은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식량과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에 반대하지 않으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과 실종자들의 행방을 가능한 최대한 조사, 확인하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5) 이와 같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각자의 법률 및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2008.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한반도 종전선언

제1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미합중국(이하 '미국')(4국을 모두 지칭할 때, 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은, 1950. 6. 25. 시작하여 1953. 7. 27.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조

참가국은 상호간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 (1)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
- (2)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 상호간에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 공격,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¹⁴⁾.

제4조

참가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 지원한다.

제5조

- (1) 참가국은 이 선언으로 인하여 종식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참가국간 합의¹⁵⁾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전체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한반도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14) 9. 19 공동성명 1항 참조

15)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6자 회담에서 합의된 직접 관련 당사국간의 평화포럼에서 논의.

- (2) 위원회는 참가국 대표자 동수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이 선언이 서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한다.
- (4)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참가국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이 선언은 참가국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7조

이 선언에 의한 종전관리기구가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 및 그 임무 수행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2007. . . .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미합중국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한반도 평화협정

대한민국(이하 '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쌍방이 이미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이하 '1991년 합의서'라 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6·15 공동선언(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2007. . . .에 있었던 한반도 종전선언의 참가국으로서,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하기서명하였다.

제1조(평화적 공존)

-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2) 남과 북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
- (3) 남과 북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2조(불가침)

- (1)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
- (2)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불가침 부속합의서'라 함)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 준수한다.
- (3)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비핵화 등)

- (1) 남과 북은 1992. 9. 17.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 (2) 북은 2005. 9. 19.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조치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한반도 이북에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3) 남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 (4) 남과 북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4조(경계선)

남과 북 사이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3장에 따르기로 하되, 해상 경계의 경우,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 대상 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평화지대)

- (1) 남과 북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
- (2)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다.
- (3) 평화지대에는 일체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 (4)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 (1)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2) 남과 북 사이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간의 군비통제 논의와 더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 생물무기협약(BWC) 비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과 같은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 준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 (4)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이 참

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7조(화해)

- (1) 남과 북은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상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 (2)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 (1)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¹⁶⁾
- (2) 남북 상호간은 1991년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합의한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을 이 협정 체결 시점의 남북관계에 조응하여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 (3) 이를 위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 (1)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과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 (2)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 (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16) 제외 탈북자의 입국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남북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협정에 표기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되, 관행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한반도 내에서의 외국군의 주둔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10조(상주대표부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 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제11조(각급 위원회 및 상설협의기구의 설치)

(1) 남과 북은 1991년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함께 설치하기로 한 화해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¹⁷⁾.

(2) 남과 북은 이 협정으로 조성될 평화 상태를 남북 간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총리급을 공동대표자로 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상설협의기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남북관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12조(정상회담의 정례화)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준수와 남북 간의 경제 및 교류협력,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제13조(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이 협정 체결 이후 발생하는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위해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를 둔다.

(2)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협정 위반 사건에 관한 전속적 심사 권한을 가진다.

(3) 동 위원회는 남과 북 대표자 동수로 구성한다.

17)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 및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협정체제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으로 삼고자하는 시도.

(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 준수, 보장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를 둔다.

(2)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와 관련하여 남과 북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은 동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미합중국 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 남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북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국제보장)

(1)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협정에 대한 남과 북의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하기 서명한다.

(2) 이 협정 발효 후 발생한 당사국간 분쟁이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화관리기구에서의 협의와 조정의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도, 당사국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개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제16조(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협정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8조(수정, 보완)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19조(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이 협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유엔 사무국에 등록한다.

2007. . .

대한민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하기서명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²⁾

평화협정(안)의 쟁점과 과제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1) 평화협정(안)에 관한 논의가 가지는 의미
- 2) 평화협정의 당사자
- 3) 평화협정의 형식 문제
- 4) 평화협정의 체결 시기 :북핵 문제 해결과의 관계
- 5) 평화협정(안)의 쟁점 및 과제

1. 평화협정(안)에 관한 논의가 가지는 의미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하여 평화체제의 제도화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하위 개념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향후의 무력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체결 당시의 관련 당사국간의 합의 내용을 규범화한 것.
-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해야 하며, 분단고착적 평화체제가 되어서는 아니됨 : 통일 지향성을 분명하게 협정안에 반영하여야 함.
- 현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매개고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축, 북미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체제 구축 등과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임. 평화체제의 구축은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이자 수단(과정)이 될 수 있으며, 평화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체결 시기의 국제 정세 및 당사국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될 것임.
- 현단계에서 평화협정안의 내용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은 평화체제에 관한 현실의 논의를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며,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 과정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음.
- 본 발제는 기존에 발표된 평화협정안의 쟁점을 확인하고 보완되고 토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첨부한 표와 같이 1차 발표 후 몇 가지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이하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위주로 발제를 하고자 함.

2. 평화협정의 당사자

(1) 남북 당사자 + 중,미/6자회담 참가국/유엔 등 국제사회 보장론(평화재단 제2안)

- 남한과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 및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보장자 혹은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 주변 강대국이 평화협정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민족 문제의 국제화를 야기함으로써 남북한이 주도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

라 민족의 이익이 좌우되거나, 분단 고착의 현상유지적 평화에 머물고 말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 협정의 실효성 문제는 평화협정 외에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나 북미 수교, 중국과 미국의 보장 등을 통하여 중층적,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평화협정에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평화재단 제2안은 4국 종전선언과 북미관계정상화로 북한 체제 보장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되고 북미가 보장하는 형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절충적인 성격이 있음.

(2) 남북미중 4자 당사자론(평화재단 제1안) :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 당사자론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 미국과 중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섭하는 것이 보장자로 역할을 한정하는 것보다 평화에 대한 두 나라의 책임성과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두 강대국이 평화협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함.

○ 북한이 미국이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평화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 현재 한반도 주변의 평화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제3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 미국은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자이며, 정전체제에서 남한과 함께 정전협정의 주된 일방이었고, 현재에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미국을 당사자에서 제외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는 현실 적합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봄.

○ 현실적으로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9. 19. 공동성명 등에 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국이 되는 남북미중 4자 포럼을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 통일 문제는 평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남과 북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4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민족 문제 해결 및 통일에 논리필연적인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평화체제 구축에

서의 남북 주도성 문제는 현실에서의 힘과 능력의 문제일 뿐,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체제)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남북 주도성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문제는 남북 주도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한 지향과 주변국의 지지를 평화문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봄.

(3) 중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 중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분쟁 상태에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였으므로, 종전선언에는 당사국으로 참여하되, 미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의 당사국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 반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평화체제 전환 논의의 현실성이 약해지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있음. 중국 또한 한반도 상황과 평화체제 구축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할 것이고, 이를 저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고 봄.

3. 평화협정의 형식 문제

(1) 사안별로 관계국간에 복수의 협정안을 체결하지는 논의가 있음

○ 아틀랜틱 카운실 보고서의 경우는 비핵화 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할 남북미중 4자 협정, 북미 협정, 군사적 신뢰구축 및 병력 재배치와 관련한 남북미 3자 협정,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 창설에 관한 협정, 남북협정, 북일 협정 등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2) 평화재단의 기존 제1안은 남북미중 기본협정, 남북협정, 북미협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안은 종전선언, 남북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안의 경우 기본협정안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4자 협정과 비핵화 협정을 포함하고 있고, 남북협정내에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제3자가 군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 등에 관하여는 선언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대서양위원회 보고서는 남북협정을 기타 협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당사국간의 협정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할 것임.

현재의 제1안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등에 관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필요시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미가 주체가 되는 별도의 군사 문제 관련 협정이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안은 종전선언을 4국이 하고, 평화협정의 체결은 남북간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나, 핵문제 등은 별도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적 전제로 핵문제 해결, 군사적 대치 상태의 종식 및 평화 관리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할 때, 남북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 위와 같은 평화협정 관련 의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제한적일 수 있음.

4. 평화협정의 체결 시기 : 북핵 문제 해결과의 관계

○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및 평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 평화협정 수단론 : 평화협정을 북한 핵 문제 등 평화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고, 핵문제와 직접 연계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를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제도적인 틀을 정치적, 포괄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

○ 평화협정 결과론 : 북한 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이전에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조속하게 주변 강대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촉진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평화협정 체결이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안에서는 2. 13.합의의 이행 로드맵 중 2단계인 북한 핵의 불능화 시점을 전후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상정하였음.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종전선언 형태의 정치적 선언이 우선하고 제도화, 규범화된 평화협정은 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음. 북한 핵의 완전 폐기 시점이 아닌 불능화 조치와 같은 일정한 중간 단계에서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봄.

○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를 거치면서, 핵문제와 평화협정의 문제는 선후의 문제에서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5. 평화협정(안)의 쟁점 및 과제

(1) 제안된 협정안 작성시 유의한 점

○ 제안된 협정안은 모두 현재의 국면이 현상유지적, 분단고착적 평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중국이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남북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남북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7. 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에서 핵심적으로 관류하고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기반한 통일 지향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음.

-정전협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문,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 19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음.

(2) 종전선언 및 종전관리기구

○ 정전협정의 효력 상실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하여 남북미중 4국이 당사

자가 되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2안은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북한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보고 별도의 로드맵으로 제시하였음.

○ 제1안에서도 종전선언은 현실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평화협정과 분리되어 별도로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전관리기구의 문제 : 종전선언에서는 종전관리 기구를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이전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 및 임무 수행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됨. 북한에 의하여 정전체제의 무력화가 시도되어 사실상 정전협정상 각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남북미 관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그 역할과 임무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종전관리기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3) 비핵화 관련 문제

○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됨

○ 2. 13. 합의 등 북핵 해결 로드맵을 평화협정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구체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북한 핵은 50여년간의 적대관계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므로 비핵화 항목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군축이나 군비통제 부분에 포함시켜 서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정과 절차를 협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현재의 협정안은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국간 비핵화선언과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에 상응하는 당사국의 조치(에너지, 경제지원, 경제협력 증진, 상호사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 재래식 전력의 경우는 남북간에 군비통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량살상무기나 핵문제,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이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관련된 논의 주체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미국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북한, 한국간의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평화협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적 수준에서라도 규범적인 형태의 군비통제 방안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협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작업이 필요함.

○ 신뢰구축 조치 및 분쟁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협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부속의정서 등에 따로 담을 수도 있음.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5)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 문제

○ 현재의 협정안은 주한미군 주둔 허용, 평화유지군의 성격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통제권을 환수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남한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중국이 당사자로 될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남한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 합의(2006. 1. 19.)가 이루어짐으로써, 남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분쟁에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리와 유지에 본질적인 한계와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수행하고, 남북 분관 관리의 남측 당사자가 되어 왔으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 지위와 기능이 상실되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임. 유엔사가 해체되면 남북간의 분쟁 발생시 유엔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사의 존속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과 유엔사의 존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 문제 또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유엔사 해체 문제는 유엔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내에 유엔사

문제가 직접 언급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인 쟁점이 될 것임.

(6) 평화관리기구의 문제

- 평화관리기구의 구체적인 임무와 구성, 지위 등에 관하여 기존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제1안은 4가 당사자의 경우에도 평화관리를 남북만이 하도록 하고, 중미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국을 제1차 관리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이 평화관리기구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에서 미국,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당사국간에 해결하지 못한 평화협정 위반과 관련한 분쟁은 평화보장조약 당사국간의 동맹에 의한 집단적, 직접적 해결이 아니라 유엔에서의 절차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조문하였음(기본협정 제10조 (2)항).

(7) 해상 경계선(특히, NLL) 문제

- NLL문제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첨예한 문제로서, 평화협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토론되어야 함.
-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본 협정안 역시 그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될 수 있음.
- 공동어로구역의 문제를 평화협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함.

(8) 경제 교류협력의 평화협정 포함 여부 및 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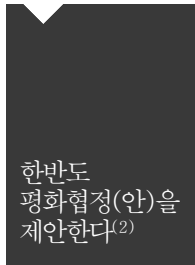
- 평화협정안에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남북간, 북미간 합의에서 경제문제를 충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군사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까지 확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

(9) 북미 관계정상화의 문제

-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진행될 것임.
- 북미간 협정서에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내용을 어떤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북미관계정상화는 북미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관하여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의 협정안에는 국교정상화, 상주대표부설치,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미군 유해 발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 남북기본합의서의 계승 문제

- 남북간의 평화체제는 남북기본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기본적인 내용은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변화된 현실(핵문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 등을 감안할 때, 남북간에도 평화협정 체결 당시에 별도의 평화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새로운 평화 문서 안에 기본합의서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계승한다는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임.



1. 평화협정의 성격과 협정 당사자

평화조약 또는 평화협정이란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어떻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전쟁을 치른 국가들 사이에 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약 또는 협약이고, 둘째는 전쟁을 치렀거나 전쟁 위협이 있는 국가들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평화협정은 어떤 성격인가?

1953년 7.27에 성립한 정전상태를 종료하고,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종전협정의 성격이 있고, 아울러 앞으로 평화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평화보장 조약의 성격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1950.6.25 - 1953.7.27 3년여의 전쟁당사자가 누구였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형식상으로는 북조선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에 참여한 16개국을 다른 일방으로 한다. 그러나 유엔군이란 실질상으로는 미군과 한국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중국군이 아니고 지원군이었고, 또 대한민국국군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1950.6.25 - 1953.7.27에 있었던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북조선, 중국, 남한, 미국의 4자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전쟁의 종결처리를 하자면 당연히 이들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남북으로 하지든가, 북·미로 하지는 제안들은 모두 비현실적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한반도 평화협정”(안)과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

우리는 지금 평화협정의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데 따라서 평화협정(안)의 내용이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원치 않든, 협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내용은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이상을 담은 좋은 것이라고 한들 실현 가능성은 없는 공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론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제출된 “평화협정(안)”들 중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명칭의 (안)은 오랫동안 남한 당국이 주장하던 2+2안이지만 실현성이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한이 비단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형식적인 문제에서 뿐 아니라, 국군의 전시작전 지휘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고, 한-미군사동맹하에 있는 남한과 맞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북측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나 불가침에 관해서라면 이미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충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지 않고 휴지화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또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하자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평화협정(안)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논의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평화협정”에서 비핵화에 관한 규정을 한 예가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예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전쟁 종결을 위한 국제 협약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닌가? 그런데 북핵문제라는 것은 북측이 남한 및 미국과 지난 50년간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사태가 아닌가? 북핵문제를 북측과 미국 및 남한간의 적대적 군비경쟁문제와 분리해서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협정”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구나 이 “한반도 평화협정” (안)은 한국 전쟁과정에서 진주하게 된 주한 미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3년에 성립했던 정전협정 제4조에는 외국군의 철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휴전협정을 폐기하겠다는 “평화협정” (안)에는 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과연 이런 (안)을 북측이 수용하고 중국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이 (안)은 전

혀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3. “한반도 종전선언” (제2안)에 관하여

이 (제2안)은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 4개국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가 당사자의 중요한 구성국가인 미국의 중요 관심사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느니 만치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북측으로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핵문제의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제2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1994년의 북·미 핵합의, 그리고 2000년의 워싱턴 북·미공동성명 등의 실패 경험이 있는 북측으로서도 북·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의 진전이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선언”이란 공염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 한반도 평화기본협정 (안)에 관하여

나는 이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안)의 주체가 남·북·미·중 4자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기본협정과 부속협정이라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특히 남북 간에는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가원수들의 비준서까지 교환한 상황에서 그것을 사문화시킨 채 다시 남북 당국 간에 “남북 간의 부속협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타당할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의 부속협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도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서가 교환되던 같은 날 쌍방 당국이 서명한 문서를 교환한바 있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모두 포함된 것이다. 새로운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 간 부속서류”를 다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북 당국 간에 만들어진 합의서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국가적 의지를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에 분명히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북·미간의 부속합의서는 북측과 미국이 각기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에 따라 협상해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그 초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 제시된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 평화협정 안에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꼭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 (안)의 제2장은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안)에는 남북 간의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관한 것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장은 보이지 않는다.

핵문제란 전쟁종결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쌍방 간의 적대적 군비경쟁의 과정에서 출현한 문제인 만치, 비핵화의 문제는 쌍방 간의 군축,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비핵화의 문제를 “평화협정”에서 다루자면 당연히 쌍방의 군축 및 군비통제나 외국군 철수 문제 등을 제2장에서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 당국이 1992년에 합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별도의 문서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2) 이 평화협정(안)은 국가 원수들의 공동선언과는 같지 않고, 최소한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조약적 성격을 담아야만 국제적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아무 때나 휴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진정한 전쟁 종결과 평화보장의 협정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1장 제1조가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제1조는 “...전쟁상태는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종료한다.**”라고 표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이 (안)의 제2조 (3)항과 (4)항은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제2조 (1)항에서 “...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사용한 “인정 존중”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단순히 “존중”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4)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남북관계는 민족 간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한 민족국가내의 잠정적 특수 관계” 임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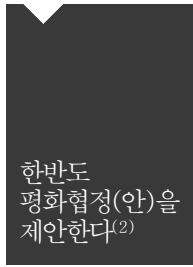
따라서 제3조는 “제3조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1992년에 쌍방 간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인정 존중한다.” 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이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4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마련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것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평화협정의 다른 일방당사자들인 중국이나 북조선 측이 동의해서 조인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들 중에 차라리 북조선 당국은 미국이 북조선의 실체를 인정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만 한다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안)제11조에 “한반도내에 외국군대의 주둔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한 미군의 역할이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이제11조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조약의 당사자를 남·북·미 3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간의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어느 나라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따라 이 제4장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제12조 발효에 관한 규정은 “...이 협정은 당사국이 각기 법적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난날 ‘남북기본합의서’가 휴지화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하여

- 전반적으로 당사자 문제, 선언내용 등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한반도종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일 것임. 참가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동적으로 종전협정 서명당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참가국 동수로 했을 때 분쟁해결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 과감하게 종전선언에서는 평화체제의 평화관리기구에 해당되는 종전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을 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즉 종전선언과 종전협약으로 구분하여 사고할 때 종전협약은 사실상 평화협약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방향성, 상징성 등만 고려하여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그래서 5조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할 경우에 5,6,7조를 포괄적으로 새로운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그때 정전협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면 충분할 것임.

2. 한반도 평화협정

- 간결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포함되었다고 생각함.
- 3조 “비핵화 등”에서 ‘등’은 동북아 평화에 대한 공동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불필요하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별도 항목으로 넣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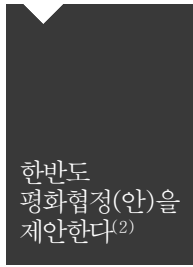
○ 4조 경계선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문제를 함께 다룬 것은 혼란스러움. 북방한계선문제와 공동어로문제는 별개의 문제임. 북방한계선과 어로문제를 분리해야 하며, 평화협정에 공동어로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항목별 레벨이 맞지 않음. 공동어로문제는 다양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군사적 보장이 필요가 있음. 공동어로문제는 과감하게 빼는 것이 바람직함.

○ 5조 2항 비무장지대 보다 ‘축소’될 수 없다는 내용을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비무장지대는 평화체제하에서 축소되어 가야 할 내용임.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철도연결과과정에서 ‘남북공동관리구역’설정으로 축소된 사례도 있음. 평화적 이용확대로 비무장지대(평화지대)는 축소되어야할 경제적 당위성을 갖고 있음. ‘축소’보다는 ‘확대’라는 표현이 좋을 것임.

○ 8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표현이 경직되어 있음. 일반적 자유의 제한과 같은 수준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위헌여지가 줄어들 것임.

○ 11조 3항 “쌍방의 총리급을 공동대표자로 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뒤 조항과 관련하여 볼 때 상설협의기구 보다는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의 상설 사무기구를 둔다”라고 해야 할 것임.

○ 15조 국제보장의 문제에 있어서 2항의 경우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평화협정이 기존의 양자상호방위협정보다 우선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부 논쟁이 필요함.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갖고 있는 군사동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절차를 존중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1. 전문

○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상태와 통일을 위하여”

2. 제3조(비핵화 등)

○ 날짜문제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은 1992년 1월 20일 합의, 1992년 2월 19일 발효됨

○ “전부”, “한반도 이북(이북)”의 용어문제 → 핵무기(및 핵물질)

○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 배치 → 배비 “남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

3. 제4조(경계선)

○ “해상경계의 경우,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 대상 구역을 남북공동어

로구역으로 지정하고”: 현 단계 NLL 문제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음. 북측은 NLL 남쪽 해상지역만을 협의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해석상으로는 남측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주장임. NLL이 협의대상으로 부각되었을 경우 문맥상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 ‘협의대상구역’의 용도는 부차적인 문제임.

○ 경계선 문제 :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10조의 “해상불가침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을 존중하면서 계속 협의한다” 평화협정 체결 후 국방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상호 경제적실리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제7조(화해)

○ 화해 부분은 남과 북 사이에서만 아니라, 북한 정권기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바람직함. 단 남과 북의 비인도적 행위는 면책될 수 없음

5. 제8조(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 이 조항은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북개발협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합의서 수준의 (2)항 (3)항의 내용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의 협력 : “남과 북은 무역, 산업, 과학기술, 환경 및 기타 경제활동 영역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남북한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농업, 에너지, 무역, 투자, 과학기술,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당사국들의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6. 별도의 통일조항

○ 통일조항은 평화협정이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 분단상태’로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별도의 통일조항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형태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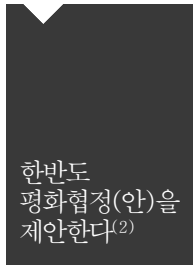
○ “남과 북은 공고한 평화상태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의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추진한다”

○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한다.

7. 제15조(국제보장)

○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협정에 대한 남과 북의...하기 서명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이 협정에 대한 남과 북의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협정서에 미국과 중국이 하기 서명하기에(이는 이미 합의가 전제된 사항임) 조항에서 ‘하기 서명한다’는 문장은 불필요.



1. 4자 평화협정안

- 현재의 4자 평화협정안은 새로운 종전선언(안)에 기존의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기초로 한 평화협정(안)을 하나의 협정에 포괄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전문

- **수정이유** - 평화협정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과 이에 따른 역사적 의미, 미래 비전의 이념, 국제적 합의로서의 특징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쟁당사자간의 중재문서로서 양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부여를 강조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고 사료됨.
- **개선안** - 전반부 뒤에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가져온 참화를 기억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당사국들의 열망을 실현하는데 동의하며,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따라 다음가 같이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구 삽입을 제안함.

○ 제1조

- **수정이유** - “...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는 군사적 의미에서의 전쟁만의 종료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라고 사료됨. 좀 더 적극적 평화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한국정전협정에도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국제법적으로도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영하여야 할 것

임.(국제법상 모든 종류의 ‘전쟁’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제법에서 사용하지 않음)

- 개선안 - “...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이로 인해 발생한 당사국간의 긴장상태가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2조

- 수정이유 - 전쟁이라는 표현을 역시 무력충돌로 변경하고, 제2항의 “반대한다.”는 표현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구개선이 요구됨. 제3항의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제5항은 규정설정의 특별한 의미발견곤란
- 개선안 - 제2항의 “... 전쟁과 상호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를 “...무력충돌행위와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로 변경. 제3항을 “이 협정과 관련하여 당사국 상호간에 제기된 어떠한 분쟁도 ...”로 변경. 제5항 삭제.

○ 제3조

- 수정이유 - 남북 특수 관계의 잠정성을 표현하여 통일의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지지, 지원한다”의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한 문구필요.
- 개선안 - “... 민족 간의 잠정적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고”, “... 평화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제4조

- 수정이유 -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라는 표현은 이 협정의 체결 주요목적이 핵전쟁의 위험제거에 놓여있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이해됨
- 개선안 - “당사국은 한반도에서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제5조

- **수정이유**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아니고(북핵문제는 평화협정과 다른 틀에서 해결되어야 함) 북핵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평화협정의 본문에 당사국의 구체적 조치까지 포함하기보다 부속서에 포함
- **개선안** - 삭제

○ 제6조

- **수정이유** - 상호사찰임에도 한미가 북한의 사찰을 허용한다는 불균형적 내용포함
- **개선안** - “당사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핵관련 물질, 시설, 또는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상호사찰을 허용한다.”

○ 제7조

- **수정이유** - 제1항의 “기존의 비무장지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 - “1953.7.27 체결된 한국정전협정 제1조에서 정한 비무장지대를...”로 변경

○ 제8조

- **수정이유** - 제2항 이하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한반도평화관련공동위원회’를 동 위원회로만 표현하여 이 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예컨대 ‘한반도평화관련국제보장위원회’)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서 “...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를 둔다.”는 문구의 수정필요. 또한 제2항에서 “... 이 협정에 위반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조사, 협의, 조정함으로써...”라고 하고 있으나 사건이라는 표현이 조약 문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며 평화적 해결의 방식으로 제기된 조사, 협의, 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남북이 1차적으로 한반도평화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듯하나

남북만이 위원회구성당사자로서 한반도내에서 남북 간 또는 미중이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평화적 분쟁해결 기능보다는 평화관리를 위한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평화적 분쟁해결기능은 ‘한반도평화관련국제보장위원회’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4항에서 “ ...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협정 위반 관련자 혹은 동 위원회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역시 ‘사건’이라는 표현과 ‘협정위반 관련자’라는 표현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개선 요구됨.

· **개선안** - “ ...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이하 ‘평화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2항 이하에서는 ‘평화공동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제2항에서 “...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당국과 한반도 평화관련국제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정도로 기능을 축소조정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기능은 ‘한반도평화관련국제보장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고려. 제4항의 경우 “... 사실 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관계당사국 또는 평화공동위는 한반도평화관련국제보장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조정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

○ 제9조

· **수정이유** - 제1항의 문구가 기술적 표현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항과 제4항에서 평화관리위원회와 평화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제3항의 분쟁의 평화적 관리는 중복적 표현이므로 삭제필요

· **개선안** - 제1항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고 평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이하 ‘평화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 제2항 “평화보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관련 당사국 및 평화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시안에 대한 심사, 조정 및 중재 ② 이 협정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관찰 ③ 기타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무수행”

○ 제10조

- **수정이유** - 제1항에서 협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당사국의 조약, 협정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제3국과 체결한 조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기존의 한미, 한중, 북중, 남북 간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제3국은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또한 제2항의 “... 당사국간에 체결한 ...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개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현은 오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정한 방식과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개정안** - 제1항은 좀 더 다양한 관련 조약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고 제2항은 “...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로 변경

○ 제13조

- **수정이유** - 국제연합사무국의 등록은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국간의 조약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동 조약의 효력에 따른 국제연합의 기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에 동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현장상의 의무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개정안** - “이 협정은 그 효력에 필요한 당사국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 **수정이유** -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 또는 사태를 전제로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조약의 종료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효력의 존속에 관한 문제를 맡기고 삭제하는 방안 필요
- **개정안** - 삭제

2. 부속협정

- 전체적으로 조문의 배치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컨대 화해, 불가침, 경계선, 군축, 기구, 상주대표부의 설치, 정상회담,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 제1조

- **수정이유** - 제1항의 경우 문구를 조약문의 형태로 수정할 필요. 제2항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기구의 설치에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안** - 제1항 “대한민국(이하 '남'이라 한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이라 한다)은 쌍방이 1972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합의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0년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 제2조

- **수정이유** - 이미 본 협정과 제1조에서 언급한 남북 간 합의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이므로 상호불가침에 대한 재확인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쌍방 간의 노력을 간단명료하게 표현
- **개선안** - 남북 간의 부속협정이므로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예시

○ 제3조

- **수정이유** - ‘남’만의 이행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균형상실
- **개선안** - 평화협정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전제로 하므로 남북이 모두 당사자가 된 비핵화확인내용을 수정

○ 제4조

- **수정이유** - 제2항의 서해 NLL문제는 평화협정의 체결 시 해결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화협정체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내용을 대체
- **개선안** - 제2항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이 협정체결 당시 남북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다.”

○ 제5조

- **수정이유** - 제3항에서 나열한 조약이 열거인지 예시인지 불분명하고 열거인 경우 그 외의 군비통제관련 조약이나 향후 체결될 조약의 문제가 남게 됨. 또한 개별 조약에 남북과 미중의 가입 또는 수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제4항의 경우 남북이 합의당사자인 조약에서 제3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규정하는 부분은 검토가 요구됨
- **개정안** - 제3항을 예시조항으로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제4항의 경우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남북 당사자 이외의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남북이 합의하여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로 변경

○ 제6조

- **수정이유** - 제1항에서 “... 서로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의 표현변경. 제2항의 ‘전쟁’표현과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문구는 제1항에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게 책임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기구로 오해될 수 있으며,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화해공동위원회와의 관계가 모호함
- **개정안** - 제1항 “... 상호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로 변경하고 제2항은 한반도무력충돌과 상호경쟁과정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평화협정체결 당시까지 잔존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의 ‘민족단결촉진위원회’로서 성격부여필요

○ 제7조

- **수정이유** - 이 협정은 통일협정이 아닌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협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자유왕래가 불가하므로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못하며, 제3항은 제1조 제2항에서 기구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 **개선안** - 제1항은 "... 구성원들은 남북 관계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왕래와..."로 수정하고 제2항은 좀 더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며, 제3항의 기구는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

○ 제8조

- **수정이유** - 제1항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2항의 취지만으로도 제1항이 규율하고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개정노력을 담기보다 조금 느슨한 표현이 당사자 간의 추후 협의를 통한 융통성확보에 도움이 될 듯함
- **개선안** - 제1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남과 북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이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조화되도록 노력한다."로 변경

○ 제9조

- **수정이유** - "...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수정하고, 상주대표부의 지위를 정하는 규정포함 필요
- **개선안** - "... 소재지에 각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이 협정에 의한 상주대표부에 대하여 남북 당국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제11조

- **수정이유** - 최고위급의 상설협의기구임에도 조문의 위상이 각종 남북관계위원회의 설치 이후에 규정하고 있어 순서상의 개선필요성 있음.
- **개선안** - 최고위급상설협의기구로서 ‘특정기구(예컨대 남북최고조정위원회)등의 설치’를 표제로 하는 규정을 합의서의 전반부에 두고 각종 위원회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

3. 북미부속협정

- 북미조약안은 제3자로서 남측이 간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종전선언

종전선언이라는 기능적 표현보다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미래지향적 표현으로 전환필요

○ 제1조

- **수정이유** - ‘전쟁’ 표현의 문제
- **개선안** - ‘무력충돌’로 개선

○ 제2조

- **수정이유** - ‘자주권’의 개념이 불명확
- **개선안** - ‘주권’ 등 법적 표현으로 전환

○ 제3조

- **수정이유** - 제1항의 “... 어떠한 전쟁과 ... 반대한다.”를 국제조약의 일반적 어구사용법에 맞추어 개선. 제2항은 제1항의 동어반복이므로 삭제
- **개선안** - 제1항 “... 안에서 국제연합현장과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위배되는 일체의

무력충돌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항은 삭제

○ 제4조

- 수정이유 - 남북사이의 관계가 잠정적 특수 관계임을 확인하는 내용보완
- 개선안 - “...공화국의 통일을 지지하며,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당사자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과정에 있는 양 당사자 사이의 특수 관계임을 인정한다.”

○ 제5조

- 수정이유 - 2+2안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상대적으로 협의단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현재의 정전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잠정적 관리기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함. 이는 현재 안의 제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개선안 - 삭제하고 제7조를 보완하여 대체

한반도 평화협정안 원안과 제1차 수정안 비교 도표

전체관련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주의 원칙 견지 : 불가침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헌법규범화 -평화통일 원칙 견지 : 남북간 의지와 국제적 보장 담기 -남북간 주도성 : 남북한과 주변국이 소통하면서도 통일 지향하는 과정 되어야 -정전협정에 비해 평화의 제도화에 기여 정도 -일반적 내용 포괄 정도 -정전위 대체하는 평화관리 기구 설치, 국제정치차원에서 평화보장체제 구축에 기여 정도 -실질적 군비통제 유도 여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당사국 동의 여부 -일반적인 형식, 내용(전쟁 종료, 교전쌍방의 선린관계, 유엔헌장준수규정, 휴전 및 평화감시기구 등 규정) 충실함 -그 외 남북한평화와 분단 극복, 통일 기본목표 설정 등 한반도 특성 담아야 -전문, 서문 보완 필요 : 협정체결의 역사적 과정과 동인, 정전체제종식과 새로운 평화체제구축의지, 한반도평화와 남북통일 지향성 강조, 협정당사자의 책무와 사명 표시 -남북, 북미간 기존 논의, 합의 준중 바람직. 그러나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상황 보장하는 내용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로 구성해야</p> <p>-내용 : 전문, 관할권 및 경계선 설정, 내정불간섭상호불가침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포기, 평화관리기구, 남북 교류협력, 통일과 지역평화 위한 노력, 타조약과의 관계, 남북 간 고위상설협의기구 설치,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국제적 확인</p> <p>-미국이 평화수립구축과정에서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 마련 필요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공식 마련 필요</p> <p>-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실질적 평화를 요식적으로 확인하는 정책 요구됨</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기능, 성격, 과제 : 포괄성, 과정성, 국제사회협력의 중요성, 검증과 투명성 보장 필수, 분단 고착의 가능성 제거</p> <p>-필수내용 : 전쟁종결선언, 경계선과 평화중립지대, 평화관리제도와 기구, 협정위반이나 돌발상황시 해결방안, 남북관계발전방향,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협정의 효력 및 수정, 보충문제</p> <p>-소극적인 현상유지적 평화협정이 아닌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적 평화창출 협정안을 주장해야 북미 수용 가능 → 안보+경제협력+국제적 보편이념 가치 담은 포괄적 접근 필요</p> <p>-통일문제는 규범적 차원에</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서라도 남북한 고유권리임을 확인 받아야</p> <p>-통일은 국토의 정상화로 생각해야. 단절 속에 평화 없다. 상호 소통 보장 담아야. 세부이해는 실무분과에서 이야기 가능</p> <p>-논쟁적 내용은 뺀다. (경계선문제, 영토, 과거사, 헌법 등)</p> <p>-4자가 전쟁 종결하면 전쟁 종결. 미, 중, 한은 국교정상화되었으므로 필요한 것은 북미간의 전쟁해소. 국교정상화가 조건. 미국의 실천의지가 관건</p> <p>-남북 간 평화협정은 불필요.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통해 국내법적 효력 갖도록 하고, 국제적 규정력은 동서독 기본조약 효력발휘</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예처럼 중미가 인정하면 됨.</p> <p>-현상변동적 평화협정 바람직</p> <p>-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위한 원칙적인 행동강령과 각 나라가 지켜야 할 규범 다루어야(법적 규범력 갖는 의미 담아야)</p>		
형식, 당사자		<p>-평화통일의 원칙, 남북한 주도성 지향점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p> <p>-종전선언+평화협정 바람직</p> <p>-포괄적평화협정안이 긍정적</p> <p>-별도의 종전선언 불필요</p> <p>-남북미(당사자)+미중(보장)</p> <p>-양안 모두 가능성 있다는 점에 동의</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다만, 당사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의 재인식 요청됨. (통일장전으로서의 성격, 국제법주체로서의 성격→남북한 특수관계 재정립 요청됨)→법적 관계로의 발전(법상 2국가)→헌법규범의 효력문제 논란 커질 것</p> <p>-2+2 형식이 바람직</p> <p>-중전선언은 불필요(한미동맹 논쟁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득실 따져야)</p> <p>-미,중보장방식 : 미중 추가 의정서, 공동커뮤니케 방식, 하기서명방식 가능</p> <p>-일,러의 건설적 역할유도 방식 : 미,중 지지 후 미일중러 공동선언 서명방식, 동북아다자안보회의출범시 공동선언 서명방식 가능</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종전선언(잠정협정)은 북핵 문제와 결부해볼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p> <p>-당사자 :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일치할 필요 없음. 2+2가 가장 바람직</p> <p>-북한안은 4자안</p> <p>-4자안이 바람직함. 미.중을 자의적 감독자 위치에 두게 해선 안됨.</p> <p>-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간 기능적 관계 혼란스러움. 1안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수단 아닌 결과론→수단으로서의 평화협정의 기능과 역할 논의 부족</p> <p>-종전선언(신뢰구축)-불능화-평화협정</p>		
기타		<p>-서명란에 대표 의미 모호. 정권대표일 경우 비준절차 과정 있어야</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관리기구 설정에서 조정, 해결의 내용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있으므로 협정안이 아닌 합의의사록 형태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가능 -양자협정의 경우 명칭을 평화협정보다 평화기본합의서로 하는 방법도 가능 -적대관계, 기술적교전상태 극복, 남북간 미북간 국제법적 관계부여에 초점 맞추고 과도한 의미 부여 지양 -논의의제와 협정안에 담을 내용 구분 필요, 담을 내용은 축소지향적으로 검토 필요 -평화협정체결시 먼저 전쟁상태종결을 명문상 선언(교환공문, 선언형식 등 다양)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종전선언+평화협정의 경우 종전선언의 잠정협정적 성격은 효력면에서 정전협정보다 법률적 효력 떨어질 수 있다는데 한계 노출 가능성 고려해야</p> <p>-국제법적조약인정→유엔회원국의 유엔헌장준수의무 이행, 발효 위한 국내법적 절차 있어야</p> <p>-양측이 통일노력 계속해나갈 것 천명하는 것 필수</p> <p>-한미동맹체제를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지역동맹형태로 유지 위해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국이 지역평화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음.</p> <p>-남북기본합의서에서 중요한 부분 재확인 차원에서</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교류협력 포함</p> <p>-고위급상설협의기구(가칭 남북고위급협의회)설치 : 양측 총리급 대표가 공동 대표, 산하에 3개위원회 두고 협력방안 구체화 하는 대화채널로 역할</p> <p>-1안은 장편성이 필요하지 않음.</p> <p>-유엔사해체는 당사자 합의 사항 아님. 종전선언에 따라 유엔에서 결의할 문제</p> <p>-국제법적 효력문제는 보강 필요</p> <p>-통일이후 기능하며 지향해야 할 문제들도 반드시 담아내야</p> <p>-공동위원회 문제 : ①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 국제보장위, 평화통일공동위, 종전관리위 이행개념 불명</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확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4개 위원회와의 관계 불명확 → 병렬적 또는 평화관리위 틀 속에서 해나가는 과정 정리 필요</p> <p>-군비통제 : ① 미.북간은 비핵화, 남.북간은 군축이라는 원칙적 합의 필요 ② 경제적 접근 통해 북한군 대안 제시(남북투자기업에 북한군 우선채용 등)</p> <p>-모든것이 위원회로 넘어가 있는데 내용 추상적, 산만</p> <p>-북한이 핵무기 폐기로 생기는 불안함 제거해야 실질적 비핵화 가능.</p>		

4자(남·북·미·중) 안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4자 평화 협정안	전문	없음		<p>- 전문 추가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미합중국(이하 '미국')(네 당사자를 모두 지칭할 때,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였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기본협정과 관련 당사국간 부속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당사국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 당사국간 관계정상화, 불가침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평화적 통일 등 제반 과제에 관한 진지하고 책임</p>	-전문이 없어서 보강함.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쳤다. 당사국은 이 협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임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이 협정을 이행,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전쟁의 종료 등		-너무 많은 내용 담음 -전쟁종료, 종료후 국제법적 지위(적대관계청산) 등을 명료하게 담아내면 충분		
제1조	(전쟁의 종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미합중국(이하, '미국')(네 당사자를 모두 지칭할 때,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0. 6. 25. 시작하여 1953. 7. 27.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p>			
제2조	<p>(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 등) (1)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 한다 (3)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4) 당사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한다 (5) 당사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한다</p>	<p>○(중전종식과 평화체제의 도래의 규범화)</p>	<p>-동일</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특수관계인정, 보호와 평화협정의 법적 효과와의 불일치성 교정 -협정안성격의 잠정성 유지 외에 진전된 남북관계 담는 것 고려(남북연합론에 근거한 관계설정 명시 등) -‘자주적’ 불필요 	-동일	
제2장	한반도 비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전략적 포지션 구속하므로 불필요(담지 않는다) -상시적 대응체제 마련 : 북한 체제보장수단으로서의 평화협정의 기능확보→점진적 해결방안 마련이 효과적 -오해가능성 때문에 넣어야 함 -핵문제 외 대량살상무기로 표현하는 것 고려 -원론적으로는 북한이 지지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하지만 실제 받아들일지, 시기 언제 될지 문제		
제4조	(비핵화선언) 당사국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	○		-동일	-협정체결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 본 안은 2.13합의에서 불능화단계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불능화 단계 직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안임. -이 조문은 평화협정체결시기와 평화협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 체결될 것인지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문임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조치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협정 체결 시까지 이	×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민공화국은 향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관련 핵시설의 폐기를 비롯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p> <p>(2) 나머지 당사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포기 절차 진행에 상응하여 6자 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경제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한다.</p> <p>(3) 당사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확대, 증진하기로 약속한다</p>			
	제6조	<p>(상호사찰) 대한민국과 미국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의 핵</p>	<p>-핵폐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 약속은 불필요</p> <p>-×</p>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무기 및 핵무기 제조 가능 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찰을 허용한다	-굳이 넣는다면 미국은 빼고 남한의 북쪽 사찰도 병기		
제3장	평화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위원회 구성, 운영 당사국 간 합의 결정 입장에 동의 -단, 부속합의서형태로 구체적인 일정합의 상태에서 체결 필요 -평화상태 교란 시 제재하는 항목 필요. 유엔안보리 상정 등 -남북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평화보장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강조 바람직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국제사회의 통제체제의 일반 규정 원용 -남북간 경험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기반 확대 -남북간 오해나 실수로 인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추가(남북군사당국간 직통전화개설 등)		
	제7조	(평화지대의 설치) (1)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 (2)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다. (3) 평화지대에는 일체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4)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동일	
	제8조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 (1) 이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 협정의 이행과 평화관리를 위하여 한반도평화	-임무, 구성, 운영 좋음	-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	-김대중도서관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된 내용 반영.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반사례 관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관리공동위원회를 둔다.</p> <p>(2)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준수 과정을 감독하며, 이 협정에 위반하는 어떤 사건이라도 조사, 협의, 조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p> <p>(3)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동수로 구성한다.</p> <p>(4) 동 위원회에서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협정 위반 관련자 혹은 동 위원회에 의하여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5)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런 각 국 평화협정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필요. 평화관리기구에 대해서 분쟁 발생 등 구체적 사례별로 어떻게 해결하고 규범화, 조문화할 것인지 연구 필요.</p> <p>-8조, 9조에 해당</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제9조	<p>(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p> <p>(1) 이 협정의 이행, 준수, 보장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를 둔다.</p> <p>(2) 동 위원회는 ① 한반도 평화관리공동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심사, 조정, 권고 ② 이 협정의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③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발생한 이견의 조정 ④ 기타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p> <p>(3) 동 위원회는 미국 대표자, 중국 대표자, 대한민국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p>	<p>-임무, 구성, 운영 좋음</p> <p>-자주성 감안, ‘한반도평화관리국제검증단’으로 명칭 바뀌서 상위기구적 성격 조정. 국제법적 효력이 주어지는 바탕에서 일반적인 국제법 절차 밟아나가는 중재자 역할 정도만 수행</p>	<p>-제목 조정(본문 조항 포함) → (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p> <p>-(2)항 ②의 일부 문구 조정 → ② 이 협정의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u>조사 및 검증</u>,</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관련국의 주권사항으로 존중하는 원칙 재천명되어야 체결 가능할 것		
제10조	(타 조약과의 관계) 이 협정은 당사국이 체결한 제3국과의 조약,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항 추가 → (2) 이 협정 발효 후 발생한 당사국간 분쟁이 당사국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국간에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군사개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 개정안의 특이사항. 이삼성 교수의 토론 반영. 한미간, 조중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개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한반도 내에 분쟁 발생 시 상호 개입 가능함. 그 때 유엔에 우선하지 못하도록 일단의 장치를 한 것이 수정안의 특기할 만한 사항임.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제11조	<p>(외국군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의 주둔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p>	<p>-외국군주둔문제(주한미군), 유엔사령부정비문제는 남북 각기 안보 및 조약상 효력 문제이므로 담을 필요없음.</p> <p>-현재는 중국, 일본 동시에 강한 시기. 안보는 북한만의 위협 문제 아님. 지역평화위해 한미동맹 유지 필요(주한미군)</p> <p>-주한미군철수문제 : 평화협정체결로 평화가 제도화되었는데 필요한지 제기될 것</p>	-동일	
	제5장	부칙			
	제12조	<p>(효력의 발생) 이 협정은 당사국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대내적 발효절차로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	-동일	
	제13조	<p>(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이 협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유엔 사무국에 등</p>	-국제적 보장체제 확보(적절)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록한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동일	
	제15조	(수정, 보완) 이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당사국의 대표권을 위임 받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동일	
	제16조	(부속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과 함께 체결된 당사국간 부속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한 부분으로서 이 협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일	
	서명	대한민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동일	
	기타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남북 부속 협정	제1조	<p>(기존 합의의 존중 및 통일 노력)</p> <p>(1) 대한민국(이하‘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북’)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6.15 공동선언(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공존과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p> <p>(2) 위 1991년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함께 설치하기로 한 화해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고, 남북 간의 관계</p>	○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개선,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조		<p>(불가침 등)</p> <p>(1)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p> <p>(2)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 준수한다.</p> <p>(3)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p>	○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	(비핵화) 남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동일	
	제4조	(경계선) (1)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 7. 27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쟁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2)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협의 대상 구역을 남북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획정 합의 필요	-동일	
			-NLL에서 북한에서 주장한 지역만의 공동어로구역지정은 문제될 수 있어. 남북기 본합의서 정도가 적당 -굳이 넣는다면 북측 관할 지역 포함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다.</p> <p>(3) 남과 북의 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p> <p>(4) 남과 북은 이상의 지상, 해상, 공중 경계선을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준수한다.</p>			
제5조	<p>(신뢰구축 및 군비통제)</p> <p>(1)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p> <p>(2) 남과 북 사이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p>	<p>-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유지 관건. 과제 제시.</p> <p>-향후 군비통제 문제해결 책무의 규범화 필요</p>	<p>-(3), (4) 항 추가 →</p> <p>(3)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간의 군비통제 논의와 더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 생물무기협약(BWC) 비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과 같은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 준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p> <p>(4)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가</p>	<p>-(3)항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미국의 북한 핵에 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법률 초안에서 군비통제에 관한 조문을 뽑아서 새로 넣음.</p> <p>-(4)항은 미국도 군사문제에서는 당사자이므로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내용 추가함. 아틀란틱위원회 보고서는 아예 3자 협약을 맺는</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수정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으로 함.
	제6조	<p>(화해)</p> <p>(1) 남과 북은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상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p> <p>(2)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p>	<p>-전쟁책임과 배상문제 해소,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위한 기본합의 근거 제시 필요</p>	-동일	
	제7조	<p>(자유왕래)</p> <p>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p>		<p>-제목조정, (2), (3)항 추가 →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p>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협력) (2) 남북 상호간은 1991년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을 이 협정 체결 시점의 남북관계에 조응하여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이를 위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이 포함되도록 함.
제8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1)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영토조항 주되 단서조항 두는 방안(통일이 될 때까지 현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등)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당사자의 법제도의 개선 제기는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적절함 -법률, 제도 개폐문제 넣는 것은 부적절. 화해공동위에서 추후 협의할 사안임 -국가보안법철폐를 정치적 문제로 강력 제기할 것		
	제9조	(상주대표부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한다고 규정한 상주대표부 기능 조절 필요	-동일	
	제10조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으로 조성	×(무리. 통일노력조항에 따른 사후조치로 상황전개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될 평화 상태를 남북 간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의 장관급 대표자 동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p>			
			<p>-제11조 추가 → (상설협의기구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총리급을 공동대표자로 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상설협의기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남북관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p>	
제11조	<p>(정상회담의 정례화)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p>		-제12조로 조정.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준수와 남북 간의 경제 및 교류협력,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서명	대한민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동일	
	기타		-평화협정 관련 부분만 다룬다.		
북미 부속 협정	제1조	(불가침) (1)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미국이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2)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 (2)항 문구 다듬음 → (2)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공식보장을 제공한다			
제2조	(평화공존)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동일	
제3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불필요. 평화통일의 주도권, 정통성이 북한에 부여된 느낌	-동일	
제4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방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에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	-동일	
제5조	(국교정상화 등) (1)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협정 체결 전에 6자회담 참가국간에 합의된 비핵화 조치를 완료		-(1), (4)항 문구 다듬음 → (1)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협정 체결 전까지 이행하기로 6자회담 참가국간에 합의된 단계적	-북핵이행조치에 따른 상호 역할을 좀 더 구체화시킴. 비핵화조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북미국교정상화조치가 교차로 동시에 같이 진행되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하였음을 확인한다.</p> <p>(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의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p> <p>(3) 미국은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완료한다.</p> <p>(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항의 쌍방 국교관계 정상화 시점까지 6자회담 참가국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이행하기로 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완료한다.</p> <p>(5)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p>		<p>비핵화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p> <p>(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 참가국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추가 비핵화 조치를 제(1)항의 쌍방 국교관계 정상화 시점까지 완료한다.</p>	<p>는 것으로 함.</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양측을 대표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			
제6조	(주한미군)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의 위상을 한반도의 평화유지 목적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남의 주권사항과 관련되므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군성격을 한반도평화유지군으로 한정하는 것 재검토필요. 평화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저촉되지 않음. -미국이 동의하겠는가? 	-동일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 추가 →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화 조치 이행과 병행하여 상호간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미국은 국제금융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넣음. -(2) 항.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것임.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p> <p>(3)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식량과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에 반대하지 않으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p> <p>(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과 실종자들의 행방을 가능한 최대한 조사, 확인하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p> <p>(5) 이와 같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각자의 법률 및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동일	
	기타		-평화협정 관련 부분으로 제한 -적대(교전)관계청산 넣기 -북미간 부속합의서 필수는 아님 : 기본협정 및 6자회담 진행과정과 중복되거나 수교시 합의사항이라서		

2(남·북 당사) + 2(미·중 보장) 안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종전 선언	제1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미합중국(이하, '미국')(4국을 모두 지칭할 때, 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은, 1950. 6. 25. 시작하여 1953. 7. 27. 정전협정의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조	참가국은 상호간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한다.		-동일	
	제3조	(1)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 (2) 참가국은 한반도 안에서 상호간에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 공격,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동일	
	제4조	참가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 지원한다.		-동일	
	제5조	(1) 참가국은 이 선언으로 인하여 종식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	-기존 정전위를 한시성있는 과도적 평화관리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체제에 관한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전체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한반도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p> <p>(2) 위원회는 참가국 대표자 동수로 구성한다.</p> <p>(3) 위원회는 이 선언이 서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한다.</p> <p>(4)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참가국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p>	-설치필요성과 기능 논의 필요		
제6조	이 선언은 참가국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동일	
제7조	이 선언에 의한 종전관리기구가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 및 그 임무 수행의 유효성을 인정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한다.			
	서명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위원장 미합중국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동일	
	기타		-전체적으로 매우 적절		
2+2 평화 협정 안	전문	대한민국(이하'남')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 의 뜻에 따라 쌍방이 이미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한반도비핵화공동선 언(1992), 6·15 공동선언 (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전문 : 전쟁상태종결선언, 남북화해 및 협력관계로의 이행의지 천명, 남북한이 특수관계라는 점 언급, 남 북 쌍방 간 평화의지 확인, 불행한 과거사 정리한다는 선언 -전쟁책임규명은 후세 역사 에 맡길 수 밖에 없어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2007. . . . 자 한반도 종전선언의 참가국으로서,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하기 서명하였다.</p>			
제1조	<p>(평화적 공존)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안에서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행위에도 반대한다. (3) 남과 북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p>	<p>-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핵심내용 확인 필요 즉,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정치,사회,문화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되어야</p>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	<p>(불가침)</p> <p>(1)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p> <p>(2)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불가침 부속합의서'라 함)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 준수한다.</p> <p>(3)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p>		-동일	
	제3조	<p>(비핵화 등)</p> <p>(1) 남과 북은 1992. 9. 17.</p>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p> <p>(2) 북은 2005. 9. 19.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조치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한반도 이북에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p> <p>(3) 남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p> <p>(4) 남과 북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p>			
제4조	(경계선) 남과 북 사이의 불가침 경계	-남북기본합의서 11조 불가침 경계선 원용하여 국가간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선과 구역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3장에 따르기로 하되, 해상경계의 경우,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 대상 구역을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경계선 아닌 평화공존을 위한 잠정적 성격임을 명시 -NLL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경계선 설정		
	제5조	<p>(평화지대)</p> <p>(1) 남한과 북한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p> <p>(2) 평화지대의 면적은 기존 비무장지대보다 축소될 수 없다.</p> <p>(3) 평화지대에는 일체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p> <p>(4)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가 담</p>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당한다.			
	제6조	<p>(신뢰구축 및 군비통제)</p> <p>(1)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p> <p>(2) 남과 북 사이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p>	<p>-92.5.7합의에 의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담당 동의</p> <p>-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위해서는 북미, 북일 수교까지 발전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운송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 포기해야</p> <p>-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정에 가입해야 할 것</p>	<p>-(3), (4)항 추가 →</p> <p>(3)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간의 군비통제 논의와 더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 생물무기협약(BWC) 비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과 같은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 준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p> <p>(4)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p>	
	제7조	<p>(화해)</p> <p>(1) 남과 북은 분단 이후 한 국전쟁을 거치고, 상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p>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서로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p> <p>(2)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p>			
제8조	<p>(자유왕래)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p>	×(다를 필요 없음)	<p>-제목조정 →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협력)</p> <p>-1)항 문구 조정 → (1)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p> <p>-2, (3)항 추가</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2) 남북 상호간은 1991년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을 이 협정 체결 시점의 남북관계에 조응하여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p> <p>(3) 이를 위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p>	
	제9조	<p>(다른 조약과의 관계) (1)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과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p>	<p>—동북아안보현실 고려하여 기존 조약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 두는 것 타당</p>	<p>—동일</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p> <p>(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p> <p>(4) 한반도 내에서의 외국군의 주둔은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p>			
제10조	<p>(상주대표부의 설치)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양측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 교환한다.</p>		-동일	
제11조	<p>(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의 설치)</p>	×(다를 필요 없음)	-제목 조정 → (각급 위원회 및 상설협의기구의 설치)	-(3)항에 여러 개의 위원회를 총괄하는 상설협의기구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u>남과 북은 이 협정으로 조성될 평화 상태를 남북 간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의 장관급 대표자 동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u></p>		<p>-원문 내용을 (2)항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삭제. - (1), (3)항 추가 → (1) 남과 북은 1991년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함께 설치하기로 한 화해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이 협정으로 조성될 평화 상태를 남북 간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평화통일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p>	<p>를 설치하도록 함. 그 협의체가 남북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3)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총리급을 공동대표자로 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상설협의기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남북관계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12조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과 북은 이 협정의 충실한 준수와 남북 간의 경제 및 교류협력,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동일	
	제13조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이 협정 체결 이후 발생하는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위해 한반도평화관리공동위원회를 둔다.	-91년 합의서에 남북군사분야의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는 '군사공동위' 통해 협의, 해결한다고 했으므로 평화협정에 구체적인 분쟁해결기구 명시하는 방안 고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2)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협정 위반 사건에 관한 전속적 심사 권한을 가진다.</p> <p>(3) 동 위원회는 남과 북 대표자 동수로 구성한다.</p> <p>(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려</p> <p>-남북군사공동기구가 주된 역할하고, 미.중의 감독기구가 보조, 지원 역할 담당 이 타당→ 적절</p> <hr/> <p>-제5조 평화지대 다음으로 연결</p>		
제14조	<p>(한반도평화관리국제보장위원회)</p> <p>(1) 이 협정의 이행, 준수, 보장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보장위원회를 둔다.</p> <p>(2) 분쟁 해결 및 평화관리</p>	<p>-분쟁해결을 유엔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국전 4개 당사자간 합의 하에 '국제상설조정위원회' 설치 고려</p> <p>-남북군사공동기구가 주된 역할하고, 미.중의 감독기구가 보조, 지원 역할 담당 이 타당→ 적절</p>	<p>-제목 조정 (본문 조항 포함) → (한반도평화관리국제조정위원회)</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p>와 관련하여 남과 북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은 동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3) 동 위원회는 미합중국 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 남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북이 추천한 제3국 대표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4) 기타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제5조 평화지대 다음으로 연결</p> <p>-남북체결협정에 특정국 대표를 구성요인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p>		
제15조	<p>(국제보장)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협정에 대한 남과 북의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하기 서명한다.</p>		<p>-(2)항 추가 →</p> <p>(2) 이 협정 발효 후 발생한 당사국간 분쟁이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화관리기구에서의 협의와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국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개</p>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제16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일	
제17조	(유효기간) 이 협정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동일	
제18조	(수정, 보완)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동일	
제19조	(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이 협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 유엔 사무국에 등록한다		-동일	

		평화협정안 원안	토론사항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수정이유
	서명	대한민국 대표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하기서명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미합중국 대표 서명		-동일	
	기타		-주요내용조항과 절차조항 장 나누어 다루기		-4자 당사자 수정안의 내용을 종전선언과 2+2 수정안에도 각 해당 위치에 넣음.